

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(제7조제1항 관련)

1. 일반 기준

- 가. 심뇌혈관질환 전체에 대한 내·외과적 포괄적 진료체계를 확보할 것
- 나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중증·응급 심뇌혈관질환의 24시간 대응체계를 확보할 것
- 다.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예방·진료·재활 등 전주기 관리체계를 확보할 것
- 라. 관할 권역, 지역 의료기관, 지역 의사회 등 심뇌혈관질환 협력체계를 확보할 것
- 마.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포괄적 진료체계 및 전주기 관리체계 추진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

2. 필수 시설 및 인력 기준

- 가. 심혈관 중환자실, 신경계 중환자실, 심뇌혈관 조영실(照影室), 뇌졸중 집중치료실, 수술실을 확보할 것
- 나. 응급심뇌혈관질환 환자의 분류 및 초기 대응 전문의를 확보할 것
- 다. 심혈관 중재시술 전문의, 뇌혈관 중재시술 전문의를 확보할 것
- 라. 심장 수술 전문의, 뇌수술 전문의를 확보할 것
- 마.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시설, 재활치료 시설을 확보할 것
- 바.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재활치료를 위한 전문의를 확보할 것
- 사.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을 확보할 것
- 아. 환자 등록 관리, 교육 전담간호사, 센터 운영 관리자 및 행정 담당자를 확보할 것

3. 치료 역량 기준

- 가. 관상동맥중재술 건수 및 야간·공휴일·응급 비율
- 나. 관상동맥우회술, 대동맥수술, 판막수술 합산 건수
- 다. 체외막산소공급(ECMO) 시행 건수
- 라. 뇌혈관 중재술 건수 및 야간·공휴일·응급 비율
- 마. 정맥내 혈전용해술 건수 및 응급 비율
- 바. 개두술 건수

※ 비고

치료 역량 기준은 각 목 지표의 양적수준과 임상수행능력 등 질적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.